AEO 공인기업 혜택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모든 부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등 행정질서벌 우선 고려	○	○	○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 단, 현행범 혹은 중대 · 명백한 탈루 정보가 있는 경우 선별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에 따라 국제공항 입출국 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동반 3인 포함)	대표자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 1인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에 따라 국제공항 출국시 보안검색 전용통로 이용 (동반 3인 포함)	대표자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 1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26조의 자율시정감사 결과 시정사항을 기업상담 전문관을 통해 시정	○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른 기업 ERP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	○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오류에 대한 제제 경감	○	○	○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수출자 · 수입자 (공통)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별검사 시 우선검사	○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른 전파법 등 요건 세관장확인 생략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의 재고조사를 자율점검표 심사 결과로 갈음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10조의 보세공장 설치 · 운영 특허 (갱신)기간 산정 시 우대	10년 이내		
	관세청과 아이엠뱅크 간 MOU에 근거, 아이엠뱅크 자금융자관련 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및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 보증 보증료 지원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AEO 공인기업 혜택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수출자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의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률 경감 혹은 선별제외(서류제출 → P/L) *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률 경감 혹은 선별제외 * 단,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른 자율정정 제외대상에 대한 자율정정 허용	O	O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 환급신청 시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대상 선별 제외 * 단,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O	O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른 환급지 세관 환급심사부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 단, 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O	O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따른 분할증명서 자동발급	O	O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O	O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 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 제외	O	O	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의 물품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 시 배제 요건 비적용	O	O	O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의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에 대한 특례 부여(출항 후 다음 날 최초세관근무시간까지) * 요건 (1)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2)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3)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O	O	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른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X	O	O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간 MOU에 근거,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요율, 수출신용보증 한도 등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O	O	O
	관세청과 기업은행 간 MOU에 근거, 기업은행 자금융자관련 금리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O	O	O

AEO 공인기업 혜택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수입자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 단,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50%	70%	10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률 경감 혹은 선별제외(서류제출 → P/L) *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의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률 경감 혹은 선별제외 * 단,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국 수출자가 AEO이고 수입자가 AEO가 아닌 경우 A등급 최소혜택(50%) 기준으로 적용함	수출자 非AEO	공급망 非AEO	50%	70%	100%
			공급망 AEO	60%	80%	
		수출자 AEO	공급망 非AEO	70%	80%	
			공급망 AEO	80%	9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P/L신고물품의 일괄통관심사			○	○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의3에 따른 관세조사 제외 *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통관적법성 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조사 가능			○	○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른 외국환거래 검사 제외 *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통관적법성 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검사 가능			○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제외			○	○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월별납부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 제외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사후세액심사 제외			○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	○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미달로 인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 적용(담보제공 생략)			○	○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전년도 제세납부실적 대비 비율) 우대			365/36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보세공장 30km 내 보관창고 증설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			○	○	○

AEO 공인기업 혜택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수입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타 보세구역으로의 물품 반출 시 화물관리번호 신청 자동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보세공장 사용 원재료의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및 사용신고 자동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입항전 사용신고 물품 포함) 심사 생략 * 단,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는 제외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른 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보세운송 신고 자동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른 보세공장 제조 · 가공 기내식의 적재 · 하기 포괄허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적용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 · 운영 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 시 경감	○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른 외국물품 사용소비신고 전자통관심사 및 사후신고	○	○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한 원산지표시 조사 * 단, 위반혐의가 중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조사부서에서 수행	○	○	○
	AM활동에 의한 수정 · 보정에 대해서는「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의 법규준수도 감점 제외	○	○	○
	AM활동에 의한 수정 · 보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변동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	○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관세사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 → 화면심사, 화면심사 → 자율정정으로 하향	50%	70%	1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의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록 갱신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X	X	○
	관세사무소 확장 시 확장사무소에 대한 잠정 공인 * 확장사무소 관세사의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 점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함	X	○	○

AEO 공인기업 혜택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보세 구역 운영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제7조의 보세창고 특허(갱신) 기간 산정 시 우대 *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에도 동일혜택 적용	6년 이내	8년 이내	10년 이내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 특허 갱신 시 소속세관 특허심사 위원회 자체 심사(본부세관 심사생략) *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에도 동일혜택 적용	○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의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연 1회 보고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10조의 보세공장 설치 · 운영 특허(갱신)기간 산정 시 우대	10년 이내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혜택 적용(제10조의 정기감사 생략 등)	○	○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의 하향조정(50% 범위 내) 검토 대상	○	○	○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보세 운송 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및 관련 혜택 적용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른 제1항제8호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허용 *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사항 심사 시 자동수리 비율 상향 조정	90%	95%	10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7조의 정기점검 기간 완화(2년→3년)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의 재보세운송 허용 *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입업체와 운송업체 모두 AEO인 경우에 한함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동일 관할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 운송 시 1건으로 일괄신고 허용	○	○	○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선박 회사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의 선박 검색대상 제외	○	○	○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화물운송 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	○	○